

	<h2 style="margin: 0;">연구수당 지급 지침</h2>	규정번호	6-3-22	
		제정일자	2018.03.01.	
		개정일자	-	
		개정번호	Ver .0	총페이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수당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연구력 향상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상기준) 연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별도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중 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자)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참여연구원으로 한다. 단,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과제참여자 존재 시, 연구책임자 단독 수령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기준)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정하되, 창의성, 성실성, 기여도 등 과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량화된 연구수당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제5조(지급시기) 연구수당은 객관적 연구 성과물이 제출된 이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급절차) 연구책임자가 과제참여자 중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면 산학협력단에서 확인 후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결재	계	소장

[별표 1]

연구수당 지급신청서

1. 연구과제

연구 사업명		연구 책임자	학과:	성명:
연구비지원기관		연구 기간		
연구 과제명				
총 연구비		연구수당 총액		

2. 연구수당 지급 대상자 평가결과

평가기준(예시)	평가점수 비율(%)	참여연구원				
		홍길동	○○○	○○○	○○○	○○○
1. 창의성	30	15	5	2	3	5
2. 성실성	30	10	10	5	3	2
3. 기여도	40	20	10	5	3	2
계	100	45	25	12	9	9
금번 지급액에 대한 비율(%) (년 1~2회 지급 권장, 1회 지급 시 100%, 2회 지급 시 50%)	50	22.5	12.5	6	4.5	4.5

※ 연구책임자는 참여자의 참여율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평가 가능함.

3. 연구수당 지급내역

구분 (총괄/공동/ 연구(보조)원)	성명	산정기준	연구수당 신청액(세전금액)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홍길동	총 연구수당 X 금번지 급액에 대한 비율 (%)			
	○○○				
	○○○				
	○○○				
	○○○				

위와 같이 연구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_____ (인)

※ 주의사항

- 과제에 계상된 연구수당 예산액에 평가 비율을 곱하여 연구수당 금액을 산출함.
- 과제 참여연구원 전체의 평가항목의 합은 100% 임.
- 기여내용을 기준으로 연구원의 기여도 및 참여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되 참여연구원 1인의 100% 수령은 불가(단, 국고에 한함)
- 연구개시 시점의 일괄 지급은 불가.
- 참여연구원 전체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 전체 기재